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검증조치 결과 보고 의무 안내

(한국연구재단 조사법무팀, 2021.6.7.)

최근 대학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 검증 후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기관의 보고 의무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보고대상 부정행위 (조사검증 완료 후 보고)

- 위조, 변조, 표절, 저자 부당 표시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행위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수행하는 행위
-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행위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 행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8조 위반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행위

□ 보고 기한

-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 보고 할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부처
- 연구관리 전문기관 : 과제 지원 기관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인 경우 연구재단에 보고함

(연구재단 문의처 : 조사법무팀 042-869-6356, ethics@nrf.re.kr)

별첨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